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175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1,6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1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기동

별지